

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08. 3. 26(수), 17:00

2. 장소 : 14층 회의실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가. 성원보고

나. 국민의례

다. 개회선언

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
마. 의결사항

1)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정에 관한 건 (2008-01-1)

- 김정태(구 방송위 법제부장)와 손승현(구 정통부 법무팀장)의 보고를 받고 논의하였으나, 전반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“의결보류”하고, 차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함.

2)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(2008-01-2) (비공개)

바. 기타

1)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6. 폐회(18:30)

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08. 4. 2(수), 14:00

2. 장소 :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원장

송도균 부위원장

이경자 상임위원

이병기 상임위원

형태근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가. 성원보고

나. 국민의례

다. 개회선언

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
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정에 관한 건 (2008-02-1)

- 김정태(구 방송위 법제부장)와 손승현(구 정통부 법무팀장)의 보고를 받고,
 - 주심위원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심도 있는 토의와 효율적 심의가 가능하고, 전체 위원이 각각의 사안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함.
 - 서면의결 근거규정에 대해서는 회의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되, 서면의결에 부치는 사안의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함.
 - 원격지에서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원격지 회의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기로 함.
 - 회의록 공개수준에 대해서는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'회의 공개'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.

사. 기타

1)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6. 폐회(15:00)

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바. 의결사항

1)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정에 관한 건 (2008-03-1)

- 광진희(의안조정팀장)의 보고를 받고, 원안대로 의결하되 조문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로 함.
 -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함.
 -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.
 -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일시, 장소, 의제, 제의안건이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함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 - 상정안건별 비공개 사항 해당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확정함.
 -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거나, 회의시작 전에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녹음·녹화·촬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.
 - 위원회의 상정 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도록 함. 다만, 위원이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 - 위원이 국내·외 출장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직접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·컴퓨터·영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함.

사. 보고사항

1) 「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」 제정에 관한 사항(비공개)

아. 기타

1)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6. 폐회(16:35)

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바. 의결사항

1) 방송발전기금 고시율에 관한 건-(주)와이티엔라디오(2008-04-003)

- 위판식(기금정책과장)의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(주)와이티엔라디오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안을 결정함.
 - (주)와이티엔라디오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은 기존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과 동일한 방송광고 매출액의 2.87%로 함.
 - (주)와이티엔라디오에 대한 징수율 고시안의 적용 시기는 시험방송 일정 등을 감안하여 (주)와이티엔라디오의 방송개시일부터 적용함.

사. 보고사항

1) 「전파법시행령」 개정추진에 관한 사항

- 조경식(전파기획과장)으로부터 2007.12.21.자 개정 전파법의 시행령 개정추진방안을 보고받고,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기로 함.
 - 주파수를 할당받은 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절차를 종전 대가할당 사업자의 경우 '신고', 심사할당 사업자의 경우 '허가'제로 운영되던 절차를 '신고'절차로 일원화 하여, 이동전화, PCS, 지역 주파수공용통신(TRS) 등 대부분의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을 신고대상으로 함.
 - 다만, 국가·지역간 전파혼간섭 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파수공용통신(TRS)·무선호출용 및 위성에 설치된 무선국은 허가제를 유지함.

2) 「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」 제정에 관한 사항(비공개)

아. 기타

6. 폐회(16:25)